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과 운영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2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건명	학과 운영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2월 16일
<p>소개의견</p> <p>본 청원인 박지현외 16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제 18회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lt;학과 운영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gt;입니다.</p> <p>최근 여러 대학의 학과가 통폐합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대학평가가 높아야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소위 돈을 잘 버는 이공계열 학과는 유지한 채 인문계열이나 예체능학과를 폐하거나 이공계열 학과들과 통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공지조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p> <p>그에 따라 본 청원인은 헌법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에 따라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지키고자 본 법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p> <p>청소년 의회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u>고등교육법</u> <u>제 21조의2 (학과의 운영)</u></p> <p>①학교는 모든 학과의 모집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②제 21조의2 1항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불가피하게 학과를 통합 또는 폐지해야 할 경우, 해당 학과의 재학생에게는 1년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④이후 학생투표를 실시해 해당학과 재학생의 70%이상의 가결표를 얻어야 가능하다. ⑤통폐합이 이루어 질 경우 같은 계열이나 학부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과가 허용되며 타 계열이나 학부, 사범대학에 관한 전과는 해당학교 교칙에 따른다. ⑥휴학생, 교환학생의 경우 휴학 또는 교환학생을 신청할 당시 사전에 투표가 이루어지며, 통폐합의 경우 제 21조의2 5항과 같게 적용한다.</p>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이 인문계열 또는 예체능 계열의 학과를 폐지시키거나 이공 계열과 통합시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아무런 공지나 통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통폐합을 반강제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의 상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학 측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평가가 높게 나와야 하고, 대학평가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학과는 통폐합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비슷한 성격을 띄는 학과들만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회복지학과와 토목환경공학과를 통합시켜 환경토목복지학과라는 학과를 만든 사례도 있을 정도로 대학은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닌 단순히 취업양성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헌법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에 의거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지키고자 본 법안을 청원하는 바이다.

## 2. 주요골자

고등교육법

제 21조의2 (학과의 운영)

①학교는 모든 학과의 모집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②제 21조의2 1항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불가피하게 학과를 통합 또는 폐지해야 할 경우, 해당 학과의 재학생에게는 1년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④이후 학생투표를 실시해 해당학과 재학생의 70%이상의 가결표를 얻어야 가능하다.

⑤통폐합이 이루어 질 경우 같은 계열이나 학부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과가 허용되며 타 계열이나 학부, 사범대학에 관한 전과는 해당학교 교칙에 따른다.

⑥휴학생, 교환학생의 경우 휴학 또는 교환학생을 신청할 당시 사전에 투표가 이루어지며, 통폐합의 경우 제 21조의2 5항과 같게 적용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 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 21조의2 (학과의 운영)
①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	①학교는 모든 학과의 모집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기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추가>

② 제 21조의2 1항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불가피하게 학과를 통합 또는 폐지해야 할 경우, 해당 학과의 재학생에게는 1년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④ 이후 학생투표를 실시해 해당학과 재학생의 70%이상의 가결표를 얻어야 가능하다.

⑤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같은 계열이나 학부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과가 허용되며 타 계열이나 학부, 사범대학에 관한 전과는 해당학교 교칙에 따른다.

⑥ 휴학생, 교환학생의 경우 휴학또는 교환학생을 신청할 당시 사전에 투표가 이루어지며, 통폐합의 경우 제 21조의2 5항과 같게 적용한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